

1. 의결주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연근해어선 안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면서 해양수산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어선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정부혁신업무 및 조직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항만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폐기물관리제도 운영 및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저감을 위한 사업 관리·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갯벌 관리·복원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총 허용어획량 제도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가필수해운제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차세대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총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해상무선통신망 제2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 항만 부문 자동화·지능화 기술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2명, 7급 4명, 8급 4명, 연구사 5명), 항만미세먼지 저감

을 위한 제도의 이행·점검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지능형해사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30명(6급 15명, 7급 15명),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현장점검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항만순찰선의 운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5명(7급 19명, 8급 27명, 9급 9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어선안전정책과 신설에 따라 수산정책실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해양수산 분야 과학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제9호 중 “해양지리정보(MGIS) 업무의 총괄”을 “해양수산
부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8. 해양수산 부문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업무

제8조제3항 중 “수산정책과·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소득복지과
·어업정책과·어선정책팀·수산자원정책과·지도교섭과·어촌양식정
책과·양식산업”을 “수산정책과·유통정책과·수출가공진흥과·소득복
지과·어업정책과·수산자원정책과·지도교섭과·어선안전정책과·어
촌양식정책과·양식산업”으로,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어선정책팀장
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
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정책팀장”을 “어선안전정책과장”으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어업정
보통신국”을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항 중 “어업정책과장·어선정책팀장

· 수산자원정책과장 및 지도교섭과장”을 “어업정책과장 · 수산자원정책과장 · 지도교섭과장 및 어선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2. 방치폐어선 예방 및 관리

8.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업무

제9조제3항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9호 중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을 “교통물류장관회의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해운항만물류분야 신북방 · 신남방 정책에 관한 업무

46.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업무

제9조제7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비상사태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업무

제10조제4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 제도의 운영

제10조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관련 법 · 제도의 운영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 · 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 활용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학술 · 연구 단체의 육성 · 지원

6.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 운영,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 제공 협의

에 관한 업무

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해상무선통신망 관련 장비의 기술
기준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인력·시설의 운용 업무

9.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단말기의 설치·보급에 관한 업무

1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안·보호조치 관련 업무

1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관련 협의
체 운영

1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기구 협력, 국제표준화 등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13. 해상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에 관한 업무

제11조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항만개발사업의 심사·평가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제11조제4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29. 스마트 항만 및 자동화에 관한 업무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6 총계 “567”을 “581”로 하고, 일반직 계 “563”을 “577”로 하며, 서
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3”을 “34”로 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87”을 “195”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

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94”를 “199”로 한다.

별표 17 총계 “569”를 “5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565”를 “57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4”를 “35”로 하고,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94”를 “202”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88”을 “193”으로 한다.

별표 18 총계 “250”을 “26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48”을 각각 “263”으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70”을 “72”로 하고,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67”을 “71”로 하며,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3”을 “47”로 하고,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7”을 “22”로 한다.

별표 18의2 총계 “251”을 “26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249”를 각각 “264”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72”를 “74”로 하고,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66”을 “70”으로 하며,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3”을 “47”로 하고,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7”을 “22”로 한다.

별표 21 총계 및 일반직 계 “802”를 각각 “857”로 하고, 행정주사보·시

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전산주사보
· 위생주사보 · 조리주사보 · 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05”를 “224”
로 하며,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위생서기 · 조리서기 · 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282”를 “309”로 하고,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
보 · 위생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96”을 “105”로 한다.

별표 21의2 총계 및 일반직 계 “805”를 각각 “86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전산주
사보 · 위생주사보 · 조리주사보 · 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08”을
“227”로 하며,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방송통신
서기 · 위생서기 · 조리서기 · 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282”를 “309”로
하고,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방송통
신서기보 · 위생서기보 · 조리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96”을 “105”로 한
다.

별표 24 총계 “1,211”을 “1,253”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209”를 각각 “1,251”로 하며,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
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393”을 “409”로 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
사보 · 환경주사보 · 등대관리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학
예연구사 “313”을 “339”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등대관리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39 다음에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방송통신서기 · 환경서기 · 해양수산서기 · 등대관리서기 · 운전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19”를 신설하고,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방송통신서기 · 환경서기 · 해양수산서기 · 등대관리서기 · 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18”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환경서기보 · 등대관리서기보 · 운전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01”을 “103”으로 하고, “통신운영주사 1”를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25 총계 “1,214”를 “1,25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212”를 각각 “1,254”로 하며,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394”를 “41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등대관리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16”을 “342”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등대관리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42 다음에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방송통신서기 · 환경서기 · 해양수산서기 · 등대관리서기 · 운전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13”를 신설

하고,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방송통신서기·환경서기·해양수산물서기·등대관리서기·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212”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서기보·해양수산물서기보·환경서기보·등대관리서기보·운전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101”을 “103”으로 하고, “통신운영주사 1”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8”을 “16”으로 한다.

별표 26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5”를 “6”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26의2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5”를 “6”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29 제2호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어업관리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어업관리단)	55명 (7급 19명, 8급 27명, 9급 9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	--------------------------------	-----------------

별표 31 제2호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령 제16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감찰팀, 미래전략팀 및 어선정책팀”을 “미래전략팀”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감찰팀장, 미래전략팀장 및 어선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감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감사담당관이, 미래전략팀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어선정책팀

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어업정책과장이 각각”을 “미래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미래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⑥ (생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⑦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해양수산 부문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및 <u>해양지리정보(MGIS) 업무의 총괄</u>	9. ----- ----- <u>해양수산 부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업무</u>
10. ~ 17. (생략)	10.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18. <u>해양수산 부문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업무</u>
⑧ · ⑨ (생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② (생략)	제8조(수산정책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산정책실에 <u>수산정책과 · 유통정책과 · 수출가공진흥과 · 소득복지과 · 어업정책과 · 어선정책팀 · 수산자원정책과 · 지도교섭과 · 어촌양식정책과 · 양식산업과 및 어촌어항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어</u>	③ ----- <u>수산정책과 · 유통정책과 · 수출가공진흥과 · 소득복지과 · 어업정책과 · 수산자원정책과 · 지도교섭과 · 어선안전정책과 · 어촌양식정책과 · 양식산업</u> ----- ----- ---- <u>기술서기관</u> -----

선정책임자는 서기관·기술서
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
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 ⑧ (생략)

⑨ 어선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방치폐어선 처리업무의 총괄

3. ~ 5. (생략)

6. 어업정보통신국의 운영 감독

7. (생략)

<신설>

⑩·⑪ (생략)

⑫ ~ ⑮ (생략)

<16>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업
정책과장·어선정책팀장·수산
자원정책과장 및 지도교섭과장
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수산정책
실장을 보좌한다.

⑰ (생략)

제9조(해운물류국) ①·② (생
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⑪ 어선안전정책과장-----
-----.

1. (현행과 같음)

2. 방치폐어선 예방 및 관리

3. ~ 5. (현행과 같음)

6.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
부-----

7. (현행과 같음)

8. 어업인 안전문화 확산에 관
한 업무

⑨·⑩ (현행 제10항 및 제11항
과 같음)

⑫ ~ ⑮ (현행과 같음)

----- 어업
정책과장·수산자원정책과장·
지도교섭과장 및 어선안전정책
과장-----
-----.

⑰ (현행과 같음)

제9조(해운물류국)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해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략)

22.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K) 광양분교 지원

23. ~ 31. (생략)

32. 극동 러시아 항만 및 배후물류단지 개발

33. ~ 38. (생략)

39. 한·중·일 복합일관수송체계 구축

40. ~ 45.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

⑦ 항만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신설>

제10조(해사안전국) ① ~ ③ (생략)

④ 해사산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신설>

③ -----
-----.

1. ~ 21. (현행과 같음)

<삭제>

23. ~ 31. (현행과 같음)

32. 해운항만물류분야 신북방·신남방 정책에 관한 업무

33. ~ 38. (현행과 같음)

39. ----- 교통물류장관회의의 운영

40. ~ 45. (현행과 같음)

46.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14. (현행과 같음)

15. 비상사태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업무

제10조(해사안전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8. (현행과 같음)

1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⑤・⑥ (생략)

⑦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e-Navigation)에 관한 전략 수립·시행

2.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및 해상무선통신망 구축·운영

3.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서비스 제공 및 전문 인력 양성

5.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보급 촉진에 관한 법·제도의 운영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관련 법·제도의 운영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기술의 개발에 관한 업무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관한 교육 -----
-- 양성·활용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학술·연구 단체의 육성·지원

6.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제공 협의에 관한 업무

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해상무선통신망 관련 장비의 기술 기준 및 표준화에 관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한 업무</u> 8. <u>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인력·시설의 운용 업무</u> 9. <u>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 단말기의 설치·보급에 관한 업무</u> 10. <u>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안·보호조치 관련 업무</u> 11. <u>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관련 협의체 운영</u> 12. <u>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국제기구 협력, 국제표준화 등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u> 13. <u>해상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에 관한 업무</u>
제11조(항만국) ①·② (생략) ③ 항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u><신 설></u> ④ 항만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항만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항만개발사업의 심사·평가 및 결산에 관한 업무</u> ④ ----- -----.

1. ~ 7. (생략) 8. <u>항만개발사업의 심사·평가 및 결산</u> 9. ~ 28. (생략) <u><신설></u> ⑤ ~ ⑦ (생략) 제46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u>해양수산 분야 과학관 건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u> ③ ~ ⑦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삭제></u> 9. ~ 28. (현행과 같음) 29. <u>스마트 항만 및 자동화에 관한 업무</u>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6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 ⑦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67</u>	<u>581</u>	+14
·	·	·	
·	·	·	
일반직 계	<u>563</u>	<u>577</u>	+14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3</u>	<u>34</u>	+1
·	·	·	
·	·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u>187</u>	<u>195</u>	+8
·	·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 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u>194</u>	<u>199</u>	+5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69</u>	<u>583</u>	+14
·	·	·	
·	·	·	
일반직 계	<u>565</u>	<u>579</u>	+14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4</u>	<u>35</u>	+1
·	·	·	
·	·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u>194</u>	<u>202</u>	+8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			
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 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	<u>188</u> · ·	<u>193</u> · ·	+5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0</u>	<u>265</u>	+15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48</u>	<u>263</u>	+15
일반직 계	<u>248</u>	<u>263</u>	+15
.	.	.	
.	.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u>70</u>	<u>72</u>	+2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u>67</u>	<u>71</u>	+4
행정서기 · 해양수산서기 · 운전 서기 또는 방호서기	<u>43</u>	<u>47</u>	+4
.	.	.	
.	.	.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17</u>	<u>22</u>	+5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8의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51</u>	<u>266</u>	+15
1 .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49</u>	<u>264</u>	+15
일반직 계	<u>249</u>	<u>264</u>	+15
.	.	.	
.	.	.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u>72</u>	<u>74</u>	+2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u>66</u>	<u>70</u>	+4
행정서기·해양수산서기·운전 서기 또는 방호서기	<u>43</u>	<u>47</u>	+4
.	.	.	
.	.	.	
해양수산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17</u>	<u>22</u>	+5

	.	.	.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802</u>	<u>857</u>	+55
일반직 계	<u>802</u>	<u>857</u>	+55
·	·	·	
·	·	·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 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 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 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 보 또는 운전주사보	<u>205</u>	<u>224</u>	+19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 ·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 기 또는 운전서기	<u>282</u>	<u>309</u>	+27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 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 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 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96</u>	<u>105</u>	+9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의2]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805</u>	<u>860</u>	+55
일반직 계	<u>805</u>	<u>860</u>	+55
·	·	·	
·	·	·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 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 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 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 보 또는 운전주사보	<u>208</u>	<u>227</u>	+19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해양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 ·위생서기·조리서기·간호서 기 또는 운전서기	<u>282</u>	<u>309</u>	+27
행정서기보·시설서기보·공업 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방송 통신서기보·위생서기보·조리 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96</u>	<u>105</u>	+9
·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4]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11</u>	<u>1,253</u>	+42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209</u>	<u>1,251</u>	+42
일반직 계	<u>1,209</u>	<u>1,251</u>	+42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u>393</u>	<u>409</u>	+16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등대관리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13</u>	<u>339</u>	+26

<u>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u> <u>· 방송통신서기 · 환경서기 · 해</u> <u>양수산서기 · 등대관리서기 · 운</u> <u>전서기 또는 방호서기</u>	<u>218</u>	<u><삭 제></u>	-218
<u>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u> <u>· 방송통신서기 · 환경서기 · 해</u> <u>양수산서기 · 등대관리서기 · 운</u> <u>전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u> <u>방호서기</u>	<u><신 설></u>	<u>219</u>	+219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 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환경 서기보 · 등대관리서기보 · 운전 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u>101</u>	<u>103</u>	+2
· <u>통신운영주사</u> · ·	· <u>1</u> · ·	· <u><삭 제></u> · ·	· -1 · ·
사무운영서기보 · ·	<u>18</u> · ·	<u>16</u> · ·	-2 ·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14</u>	<u>1,256</u>	+42
1 .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212</u>	<u>1,254</u>	+42
일반직 계	<u>1,212</u>	<u>1,254</u>	+42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u>394</u>	<u>410</u>	+16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등대관리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16</u>	<u>342</u>	+26

<u>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u> <u>· 방송통신서기 · 환경서기 · 해</u> <u>양수산서기 · 등대관리서기 · 운</u> <u>전서기 또는 방호서기</u>	<u>212</u>	<u><삭 제></u>	-212
<u>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u> <u>· 방송통신서기 · 환경서기 · 해</u> <u>양수산서기 · 등대관리서기 · 운</u> <u>전서기 · 방재안전서기 또는</u> <u>방호서기</u>	<u><신 설></u>	<u>213</u>	+213
행정서기보 · 시설서기보 · 공업 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환경 서기보 · 등대관리서기보 · 운전 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u>101</u>	<u>103</u>	+2
. <u>통신운영주사</u> . .	. <u>1</u> . .	. <u><삭 제></u> . .	-1
사무운영서기보 . .	<u>18</u> . .	<u>16</u> . .	-2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6]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5</u>	<u>6</u>	+1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6의2]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u>5</u>	<u>6</u>	+1
사무운영서기보	<u>3</u>	<u>2</u>	-1